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보고서

2021. 10.

KBIZ 중소기업중앙회

목 차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 개요	1
3. 조사 내용	1
4. 응답자 현황	2

2 조사 결과

1. 주52시간제 시행의 어려움 여부	3
1-1. 주52시간제 어려움의 이유(중복응답)	4
2. 주52시간제 대응방법(중복응답)	5
2-1. 현재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중복응답)	6
2-2. 유연근무제 운영 시 어려운 점(중복응답)	7
2-3. 향후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적합한 유연근무제도	8
3.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 제도 개선사항(중복응답)	9
4.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중복응답)	10
5. 주52시간제 관련 업체 상세 의견사항	11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에도 본격적으로 적용('21년 1월 : 50~299인 기업 대상에서 '21년 7월 : 5~49인 기업 대상까지 확대)되기 시작함. 이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국회 등에 제도 개선방향을 건의하기 위한 기초자료 작성이 본 조사의 목적임

2.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제조업 및 비제조업 (414개 사)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FAX, 전화조사
■ 조사기간	2021. 09. 03. ~ 2021. 09. 16. (약 10일)
■ 조사기관	(주)메트릭스리서치

3. 조사 내용

구분	상세 내용
1. 업체 기본 정보	- 업종,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소재지 등
2. 주52시간제 시행	-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어려움 및 애로사항 - 주52시간제 대응 방안 -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관련 애로사항 - 향후 유연근무제 도입 시 가장 적합한 제도
3. 법·제도 개선사항	-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 - 관련 업체 상세 의견

4. 응답자 현황

○ 본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사례수	비율 (%)
전 체		(414)	100.0
소재지	수도권	(215)	51.9
	비수도권	(199)	48.1
업종	제조업	(261)	63.0
	비제조업	(153)	37.0
종사자	5~29인	(164)	39.6
	30~49인	(138)	33.3
	50~299인	(112)	27.1
매출액	50억 미만	(112)	27.1
	50억~100억 미만	(126)	30.4
	100억~150억 미만	(70)	16.9
	150억 이상	(106)	25.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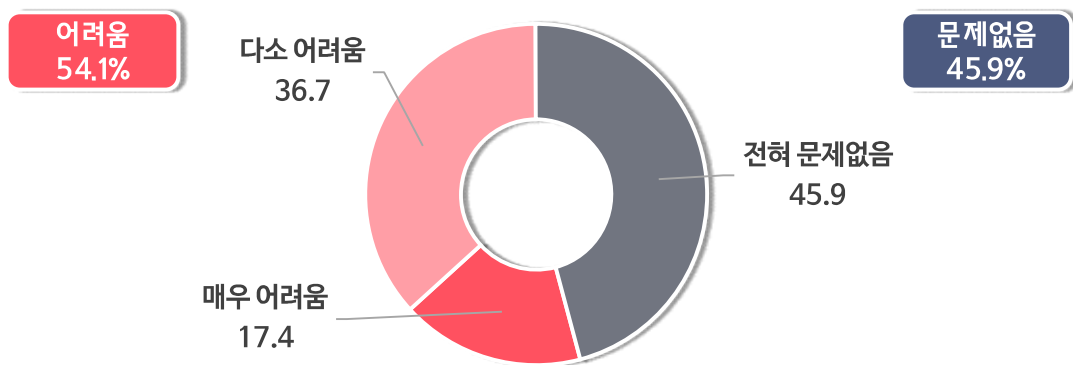
조사 결과

1. 주52시간제 시행의 어려움 여부

-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어려움’(① 매우 어려움 + ② 다소 어려움)이 54.1%로, ‘전혀 문제없음’(45.9%)보다 8.2%p 높은 특징을 보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어려움’ 비율은 64.8%로, ‘비제조업’(35.9%)보다 28.9%p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1〉 주52시간제 시행의 어려움 여부

(단위 : %)



〈표 1〉 주52시간제 시행의 어려움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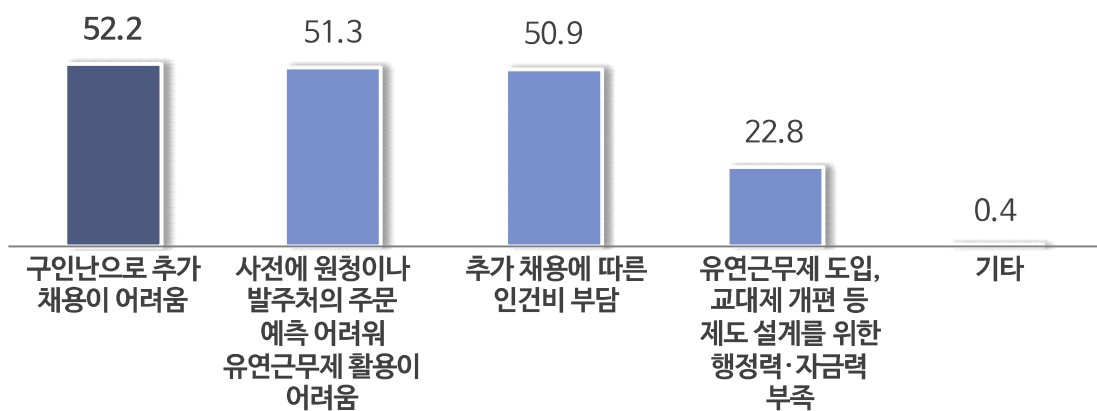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어려움	매우 어려움	다소 어려움	전혀 문제없음
전 체		(414)	54.1	17.4	36.7	45.9
소재지	수도권	(215)	41.4	10.2	31.2	58.6
	비수도권	(199)	67.8	25.1	42.7	32.2
업종	제조업	(261)	64.8	22.2	42.5	35.2
	비제조업	(153)	35.9	9.2	26.8	64.1
종사자	5~29인	(164)	56.7	18.3	38.4	43.3
	30~49인	(138)	51.4	15.9	35.5	48.6
	50~299인	(112)	53.6	17.9	35.7	46.4
매출액	50억 미만	(112)	50.9	22.3	28.6	49.1
	50억~100억 미만	(126)	50.0	6.3	43.7	50.0
	100억~150억 미만	(70)	67.1	22.9	44.3	32.9
	150억 이상	(106)	53.8	21.7	32.1	46.2

1-1. 주52시간제 어려움의 이유(중복응답)

- 주52시간제의 어려움의 이유로는 ‘구인난으로 추가 채용이 어려움’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전에 원청이나 발주처의 주문 예측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51.3%),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사전에 원청이나 발주처의 주문 예측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150억 이상 : 57.9%)’ 응답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그림 2〉 주52시간제 어려움의 이유(중복응답)

(단위 : %)



〈표 2〉 주52시간제 어려움의 이유(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구인난으로 추가 채용이 어려움	사전에 원청이나 발주처의 주문 예측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유연근무제 도입, 교대제 개편 등 제도 설계를 위한 행정력·자금력 부족	기타
전 체		(224)	52.2	51.3	50.9	22.8	0.4
소재지	수도권	(89)	53.9	55.1	41.6	23.6	0.0
	비수도권	(135)	51.1	48.9	57.0	22.2	0.7
업종	제조업	(169)	56.8	54.4	51.5	23.1	0.0
	비제조업	(55)	38.2	41.8	49.1	21.8	1.8
종사자	5~29인	(93)	46.2	48.4	60.2	20.4	1.1
	30~49인	(71)	63.4	52.1	36.6	22.5	0.0
	50~299인	(60)	48.3	55.0	53.3	26.7	0.0
매출액	50억 미만	(57)	45.6	49.1	64.9	28.1	1.8
	50억~100억 미만	(63)	55.6	49.2	44.4	19.0	0.0
	100억~150억 미만	(47)	59.6	48.9	46.8	17.0	0.0
	150억 이상	(57)	49.1	57.9	47.4	26.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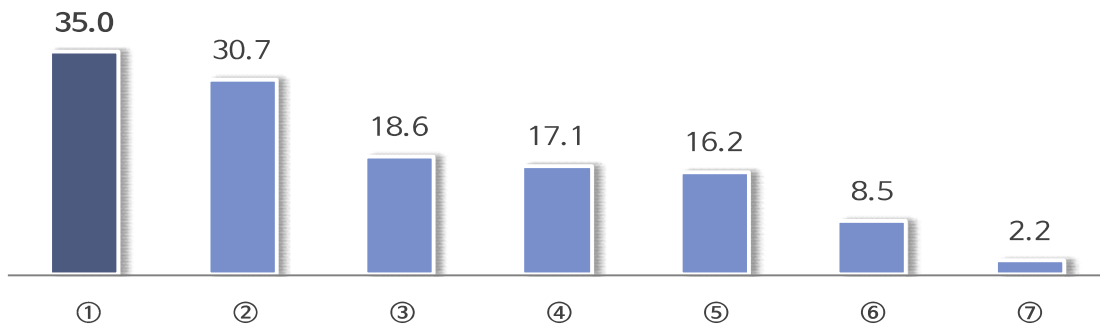
Base) 1.주 52시간제 시행의 어려움 현황에서 '① 매우 어려움', '② 다소 어려움'을 응답한 업체 수

2. 주52시간제 대응방법(중복응답)

- 주52시간제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당초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내로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음’(3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30.7%), ‘추가 인력을 채용해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하고 있음’(1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29인은 ‘30인 미만 기업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음’(40.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49인은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37.7%)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 주52시간제 대응방법(중복응답)

(단위 : %)



〈표 3〉 주52시간제 대응방법(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414)	35.0	30.7	18.6	17.1	16.2	8.5	2.2
소재지	수도권	(215)	41.9	37.2	15.3	12.1	12.6	5.6	0.9
	비수도권	(199)	27.6	23.6	22.1	22.6	20.1	11.6	3.5
업종	제조업	(261)	30.7	24.5	21.5	22.2	18.4	11.5	1.9
	비제조업	(153)	42.5	41.2	13.7	8.5	12.4	3.3	2.6
종사자	5~29인	(164)	32.3	20.7	12.8	16.5	40.9	2.4	3.0
	30~49인	(138)	37.0	37.7	18.8	15.9	0.0	12.3	0.7
	50~299인	(112)	36.6	36.6	26.8	19.6	0.0	12.5	2.7
매출액	50억 미만	(112)	42.0	24.1	9.8	13.4	27.7	1.8	4.5
	50억~100억 미만	(126)	34.1	23.8	20.6	21.4	19.0	7.9	0.0
	100억~150억 미만	(70)	27.1	45.7	22.9	15.7	8.6	14.3	2.9
	150억 이상	(106)	34.0	35.8	22.6	17.0	5.7	12.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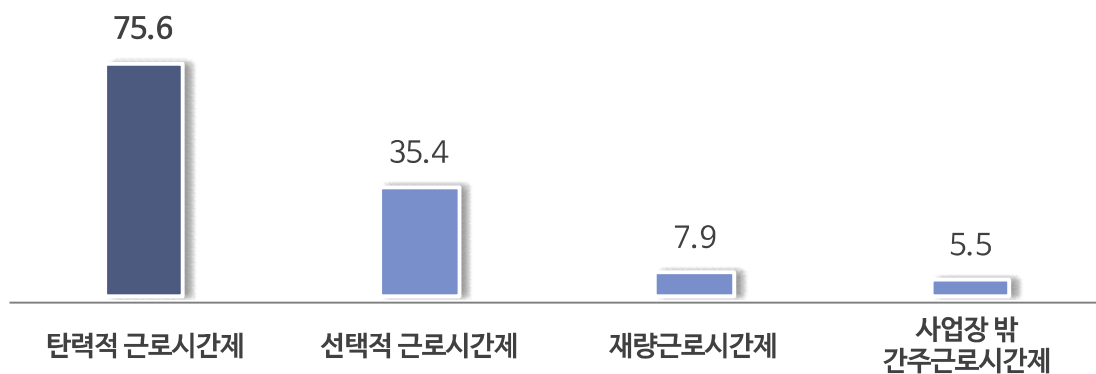
- ① 당초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내로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음
- ②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 ③ 추가 인력을 채용해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하고 있음
- ④ 사전근로계획 수립이 어려워 주52시간 초과근로 필요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하고 있음
- ⑤ 30인 미만 기업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음
- ⑥ 기존 2교대를 3교대로 개편하는 등 교대제 개편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
- ⑦ 기타

2-1. 현재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중복응답)

- 현재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75.6%), ‘선택적 근로시간제’(35.4%), ‘재량근로시간제’(7.9%),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5.5%)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매출액이 낮을수록 ‘재량근로시간제’(50억 미만 14.8%) 응답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며, 매출액이 높을수록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150억 이상 10.5%) 응답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그림 4〉 현재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중복응답)

(단위 : %)



〈표 4〉 현재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전 체		(127)	75.6	35.4	7.9	5.5
소재지	수도권	(80)	71.3	37.5	6.3	8.8
	비수도권	(47)	83.0	31.9	10.6	0.0
업종	제조업	(64)	79.7	34.4	6.3	4.7
	비제조업	(63)	71.4	36.5	9.5	6.3
종사자	5~29인	(34)	76.5	32.4	11.8	0.0
	30~49인	(52)	73.1	30.8	7.7	7.7
	50~299인	(41)	78.0	43.9	4.9	7.3
매출액	50억 미만	(27)	77.8	29.6	14.8	0.0
	50억~100억 미만	(30)	73.3	43.3	10.0	3.3
	100억~150억 미만	(32)	78.1	28.1	6.3	6.3
	150억 이상	(38)	73.7	39.5	2.6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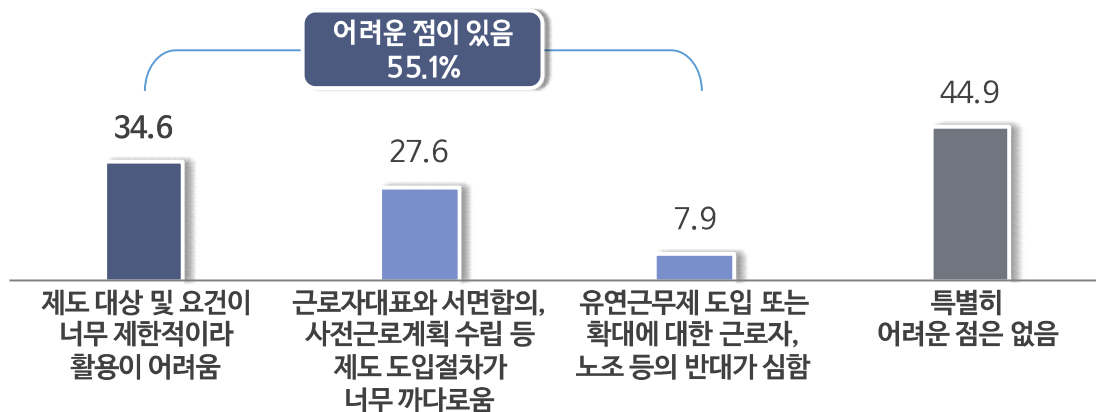
Base) 2. 주52시간제 대응방법에서 '③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을 응답한 업체

2-2. 유연근무제 운영 시 어려운 점(중복응답)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기업은 55.1%이며, 이 중 ‘제도 대상 및 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라 활용이 어려움’ 응답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전근로계획 수립 등 제도 도입절차가 너무 까다로움’(27.6%), ‘유연근무제 도입 또는 확대에 대한 근로자, 노조 등의 반대가 심함’(7.9%) 순으로 조사됨
 -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음’은 44.9%로 조사됨

〈그림 5〉 유연근무제 운영 시 어려운 점(중복응답)

(단위 : %)



〈표 5〉 유연근무제 운영 시 어려운 점(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제도 대상 및 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라 활용이 어려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전근로계획 수립 등 제도 도입절차가 너무 까다로움	유연근무제 도입 또는 확대에 대한 근로자, 노조 등의 반대가 심함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음
전 체		(127)	34.6	27.6	7.9	44.9
소재지	수도권	(80)	30.0	25.0	0.0	55.0
	비수도권	(47)	42.6	31.9	21.3	27.7
업종	제조업	(64)	40.6	37.5	12.5	31.3
	비제조업	(63)	28.6	17.5	3.2	58.7
종사자	5~29인	(34)	47.1	11.8	14.7	47.1
	30~49인	(52)	25.0	32.7	3.8	48.1
	50~299인	(41)	36.6	34.1	7.3	39.0
매출액	50억 미만	(27)	37.0	11.1	14.8	59.3
	50억~100억 미만	(30)	36.7	30.0	10.0	43.3
	100억~150억 미만	(32)	40.6	40.6	0.0	31.3
	150억 이상	(38)	26.3	26.3	7.9	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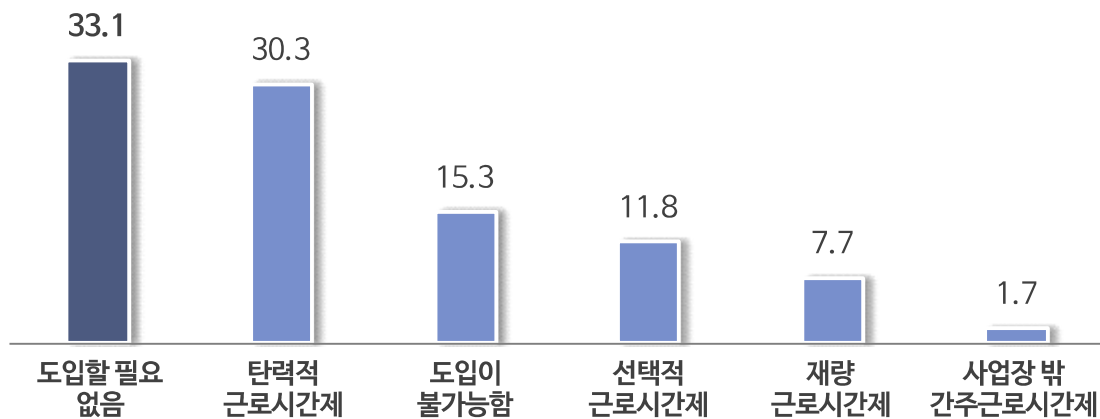
Base) 2. 주52시간제 대응방법에서 '③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을 응답한 업체

2-3. 향후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적합한 유연근무제도

- 향후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적합한 유연근무제도로는 ‘도입할 필요 없음’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30.3%), ‘도입이 불가능함’(15.3%), ‘선택적 근로시간제’(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도입할 필요 없음’이 26.9%로 비제조업(46.7%)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도입이 불가능함’은 19.8%로 비제조업(5.6%)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7〉 향후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적합한 유연근무제도

(단위 : %)



〈표 6〉 향후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적합한 유연근무제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도입할 필요 없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불가능함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전 체		(287)	33.1	30.3	15.3	11.8	7.7	1.7
소재지	수도권	(135)	44.4	27.4	10.4	9.6	5.9	2.2
	비수도권	(152)	23.0	32.9	19.7	13.8	9.2	1.3
업종	제조업	(197)	26.9	32.5	19.8	12.2	7.6	1.0
	비제조업	(90)	46.7	25.6	5.6	11.1	7.8	3.3
종사자	5~29인	(130)	32.3	34.6	13.1	10.0	8.5	1.5
	30~49인	(86)	33.7	30.2	18.6	12.8	3.5	1.2
	50~299인	(71)	33.8	22.5	15.5	14.1	11.3	2.8
매출액	50억 미만	(85)	35.3	25.9	8.2	17.6	11.8	1.2
	50억~100억 미만	(96)	33.3	38.5	11.5	9.4	5.2	2.1
	100억~150억 미만	(38)	26.3	31.6	21.1	10.5	5.3	5.3
	150억 이상	(68)	33.8	23.5	26.5	8.8	7.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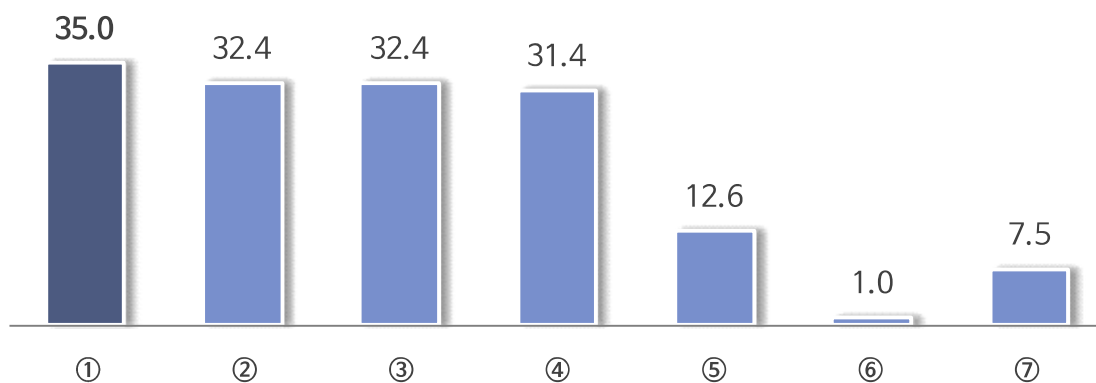
Base) 2. 주52시간제 대응방법에서 '③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을 응답한 업체

3.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 제도 개선사항(중복응답)

-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고용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가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한도를 현행 주단위(12시간)에서 월단위(4주합산 48시간)로 변경 허용’(3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8〉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 제도 개선사항(중복응답)

(단위 : %)



〈표 7〉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법, 제도 개선사항(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414)	35.0	32.4	32.4	31.4	12.6	1.0	7.5
소재지	수도권	(215)	30.2	28.8	35.3	29.3	17.2	0.5	7.4
	비수도권	(199)	40.2	36.2	29.1	33.7	7.5	1.5	7.5
업종	제조업	(261)	37.5	35.6	28.4	31.8	12.6	1.1	7.7
	비제조업	(153)	30.7	26.8	39.2	30.7	12.4	0.7	7.2
종사자	5~29인	(164)	33.5	34.1	29.3	32.3	8.5	1.8	9.8
	30~49인	(138)	31.2	27.5	34.8	32.6	15.9	0.0	5.1
	50~299인	(112)	42.0	35.7	33.9	28.6	14.3	0.9	7.1
매출액	50억 미만	(112)	26.8	32.1	27.7	32.1	6.3	0.9	14.3
	50억~100억 미만	(126)	38.1	34.1	28.6	29.4	15.9	0.8	4.8
	100억~150억 미만	(70)	40.0	25.7	47.1	35.7	17.1	1.4	2.9
	150억 이상	(106)	36.8	34.9	32.1	30.2	12.3	0.9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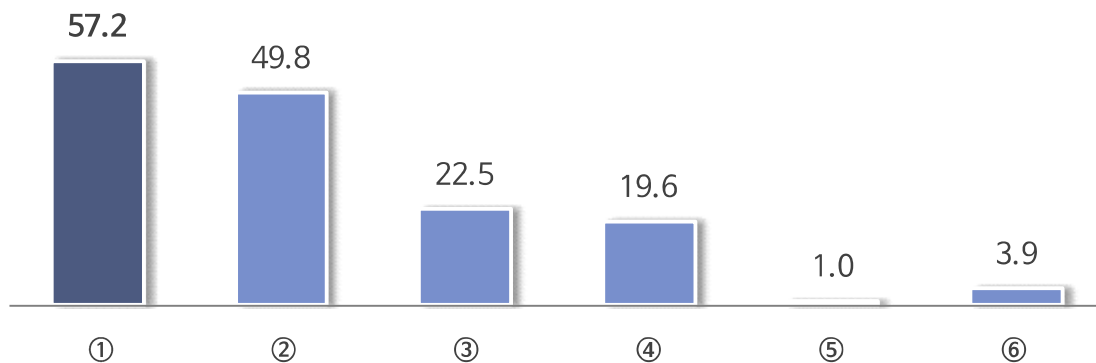
- ① 고용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
 ② 노사 합의시 연장근로한도를 현행 주단위(12시간)에서 월단위(4주합산 48시간)로 변경 허용
 ③ 「탄력근로제」의 사전근로계획 수립 및 변경방식 등 요건·절차 완화
 ④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 및 대상 확대
 ⑤ 3개월 단위 「선택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⑥ 기타
 ⑦ 없음

4.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중복응답)

-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으로는 ‘추가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57.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비용 지원’(49.8%), ‘개별기업 특성에 맞는 주52시간제 대응방안 안내하는 컨설팅 지원’(2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개별기업 특성에 맞는 주52시간제 대응방안 안내하는 컨설팅 지원(150억 이상 : 33.0%)’ 응답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그림 9〉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중복응답)

(단위 : %)



〈표 8〉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사항(중복응답)

(단위 :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 체		(414)	57.2	49.8	22.5	19.6	1.0	3.9
소재지	수도권	(215)	58.6	40.9	26.5	16.3	0.5	2.8
	비수도권	(199)	55.8	59.3	18.1	23.1	1.5	5.0
업종	제조업	(261)	56.7	55.2	22.2	24.9	0.8	3.4
	비제조업	(153)	58.2	40.5	22.9	10.5	1.3	4.6
종사자	5~29인	(164)	57.3	47.0	20.1	20.1	2.4	5.5
	30~49인	(138)	57.2	57.2	24.6	15.9	0.0	1.4
	50~299인	(112)	57.1	44.6	23.2	23.2	0.0	4.5
매출액	50억 미만	(112)	58.9	49.1	14.3	18.8	2.7	5.4
	50억~100억 미만	(126)	60.3	53.2	19.8	22.2	0.0	3.2
	100억~150억 미만	(70)	57.1	57.1	24.3	18.6	1.4	0.0
	150억 이상	(106)	51.9	41.5	33.0	17.9	0.0	5.7

- ① 추가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②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비용 지원
- ③ 개별기업 특성에 맞는 주52시간제 대응방안 안내하는 컨설팅 지원
- ④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확충 및 개선 비용 지원
- ⑤ 기타
- ⑥ 없음

5. 주52시간제 관련 업체 상세 의견사항

○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9〉 주52시간제 관련 업체 상세 의견사항

세부내용
탄력 근로제 도입하고 있는데 주 단위 12시간을 48시간으로 허용 바람
중소기업에는 52시간제 너무 힘이 듭. 비용은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일을 하지 못해 급여가 줄어들어 힘이 듭
중소기업의 업무가 업종별 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 재량에 맡기고 년 단위라든가 유연하게 요망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를 하기 어려움. 기업의 실수에 과도한 행정조치가 아닌 주의정도로 해결되면 좋겠음
주 52시간제 정부가 강요하지 말고 사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함
잔업시간을 사업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함
원하는 사업장에 52시간 아닌 100시간이라도 허용하게 해주고 임금도 적용해줘야 함
업종별 공정별로 근무시간이 다 다른데 사업장마다 주 52시간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근로자가 투잡, 쓰리잡까지 해서 비용을 벌어야 하다 보니 근로자가 더 힘들어 함
소기업 경우 물량에 대한 변동 폭이 크다보니 주 52시간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부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주52시간제를 없애야 함. 근로자들이 더 일하고 싶어도 못 함
도금업체로서 발주처의 주문예측이 어려워 주문량 많을시 야간근무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52시간제 묶여 기존인원으로 시간을 쪼개어 하다 보니 급여가 줄어들었음(인력 구하기도 어려운데 퇴사할까 두려움)
업종 차이를 선별적으로 차등을 두어서 근로자들이 급여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야간근무제 허용이 필요함
기준에 시행하던 시간에 비해 근무시간이 줄어 근로자들이 많이 힘들어 함
기업에 생산설비 비용 무상지원 요망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추가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경제적 타격이 심해서 52시간 제도를 회사에 자율선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함
근로자 원할 시 노사 합의만으로도 근로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주 52시간제는 업종별 선택적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급여가 축소되어 업무마비(이직율이 높아짐))
현실적으로 주 52시간제는 어려우며 유예 기간을 좀 더 길게 주든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정책이며 인력난도 심각함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움
인원채용을 하려고 해도 인원채용이 매우 어려워 구인난 봉착
탄력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일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함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움
인력난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함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기계설비 특성상 24시간 돌아가야 하고 급여는 줄어 들고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음. 주52시간제는 현실에 맞지 않음
중소기업이고 3d업종이라 채용광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음.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외국인근로자 채용도 어려움. 주52시간 시행으로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코로나 끝나서 경기 호황이 올 시에 인력 채용할 수 있게 채용 방안을 완화해주면 좋겠음
기계가 노후 되었고,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자금지원이 필요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희망함(제조업이라도 회사마다 상황이 다 다르므로 재량으로 선택하면 좋겠음)
제조업에 주 52시간제도가 맞지 않음
노사 간의 불화 조장(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하락시킴)
신규 취업자들이 첫 임금 받고 힘든 제조업에서 일하는 데 시간 제한하기 어려움